

의안번호	2209513
의 퇴 인	신영대 의원
회 답 일	2025. 4. 24.
추계번호	25A2055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2조의8(소상공인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지원)	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30조제1항제1호¹⁾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를 하는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은 같은 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에 준하는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음(제1항) - 건강진단의 시기, 항목,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함(제2항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12조의8 (소상공인에 대한 특수 건강진단 지원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안 제12조의8에 따라 소상공인은 특수건강진단에 준하는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고 국가가 이를 지원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개정안은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에 준하는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함

1)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30조(특수건강진단 등)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(이하 "특수건강진단"이라 한다)을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.

1.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(이하 "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"라 한다)에 종사하는 근로자

□ 다만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추계에 한계가 있음

- (지원대상) 현재 시점에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를 하는 소상공인을 파악하기가 어렵고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대해 건강진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원대상을 합리적으로 가정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
- (지원시기 및 주기) 현재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에서 대상 유해인자를 기준으로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, 소상공인이 노출된 유해인자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워 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를 합리적으로 가정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

[표 1]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(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202조제1항 관련)

구분	대상 유해인자	시기 (배치 후 첫 번째 특수 건강진단)	주기
1	N,N-디메틸아세트아미드, 디메틸포름아미드	1개월 이내	6개월
2	벤젠	2개월 이내	6개월
3	1,1,2,2-테트라클로로에탄,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, 염화비닐	3개월 이내	6개월
4	석면, 먼 분진	12개월 이내	12개월
5	광물성 분진, 목재 분진, 소음 및 충격소음	12개월 이내	24개월
6	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	6개월 이내	12개월

자료: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별표23

- (지원단가) 현재 정부는 경찰공무원, 여성농어업인, 소방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, 지원대상의 유해 요인, 직업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소상공인의 유사사례로 준용하기 어려움
 - 참고로, '25년 기준 특수건강진단 1인당 지원단가는 야간 교대근무 등에 노출된 경찰공무원 141천원, 여성농어업인 220천원, 소방공무원 300천원으로 편성됨
- 또한 건강진단의 시기, 항목, 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움(안 12조의8제2항)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서영빈	권아영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서영빈	02-6788-4653	ybin@nabo.go.kr